

#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 法 (13)

### 모두가 말리는 동업을 꼭 해야 한다면?

코로나 19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둔 A씨는 평소 사업 구상을 함께 하던 B씨와 동업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열이면 열 모두 동업을 말리고 있다. 어떻게 해야 동업관계에서 손해보지 않을까.

동업은 여러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 초기 비용이 매몰될 수 있을 때 각자가 위 비용을 분담하여 투자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이 부과되는 표준은 매출이 아니라 당기 순이익이므로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자 수만큼 누진율에 따른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지요. 특히 동업자는 내가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업을 하다보면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한 사람은 억울한데 그 억울함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소송을 해도 뽀족한 수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업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양합니다. 먼저 사업 초기의 '의짜의사'하는 마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사업이 잘되지 않을 경우 누구의 책임인지를 둘러싸고 당연히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

이 잘되는 경우에도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에 따라 이익을 얼마나 가져갈 건지를 놓고 엄청나게 싸우곤 합니다.

따라서 동업은 명확한 책임소재와 권리, 의무 사항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규정한 뒤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는 구두로 동업을 약정한 뒤 사업을 진행하게 되나, 이는 분쟁의 씨앗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동업이 파기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나열식으로 써놓아야 합니다. 둘째 모든 신고는 공동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차후 단독으로 특정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해야 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돈의 투명합니다. 세세한 자금집행도 모두 기록하고 열람하여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노무가 중요한 동업의 경우에는 정확한 업무 분담표

를 만들고 특히 분담한 업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손익 분배의 비율 조정에 대한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동업 계약은 일종의 조합계약입니다. 조합 계약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지만 아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1. 동업의 목적과 상호
2. 사업장 소재지
3. 출자 지분 : 1,000만 원을 5대 5의 비율로 출자한다.
4. 손익 분배의 비율 : 4대 6의 비율로 손익을 분배한다. 단, 업무 분담표의 이행 여부에 따라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5. 동업 개시 일자
6. 동업의 종료 : 일방의 의사로 동업을 종료할 수 있으나, 사업 시작 후 1년 내에는 투자 지분의 회수가 불가능하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 시 세금 혜택을 얻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공동 사업임을 밝히고 미리 작성한 동업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에는 '대표자 외 1인'으로 기재됩니다.

부부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은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알뜰한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성공할 경우 한 사람의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소득으로 분배되어 누진되는 소득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요.

### 허운 변호사는?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자문변호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2020, 원앤원북스),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등을 출간.